



임금을 '디지털 지급'으로 받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

노동자용 가이드

노동기준법으로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 은행계좌 등으로 임금을 이체할 수 있게 허용해 왔습니다. 캐시리스 결제 보급 및 송금 수단의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자금이동업자 (●●Pay 등)의 계좌로 임금 지급(임금의 디지털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임금의 디지털 지급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나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자금이동업자(지정자금이동업자)는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주지용 자료'나 '지정자금이동업자 일람'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1 임금 디지털 지급으로 받기에 앞서서

★이 리플릿에는 임금을 디지털 지급으로 받는 것을 희망하는 노동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임금을 디지털 지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임금의 디지털 지급에 관한 노사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또한 노사협정에서는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지정자금이동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사협정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고용주가 체결합니다.



임금의 디지털 지급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디지털 지급으로 임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나 이용하고 싶은 지정자금이동업자가 노사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나 노동조합 등에 상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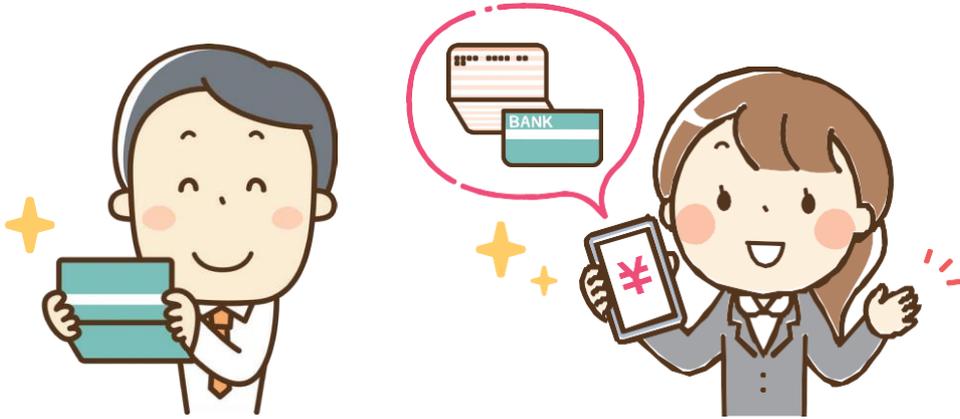
⚠ 유의해 주세요

- 임금의 디지털 지급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은행계좌 등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의 일부를 디지털 지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은행계좌 등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의 디지털 지급을 선택한 경우라도 그 후 임금의 수령 방법을 은행계좌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의 흐름

● 임금을 디지털 지급으로 받고 싶은 경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지정자금이동업자의 서비스 내용 확인
- ② 고용주에 대한 개별 동의 등
- ③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이용 신청



1 각 지정자금이동업자의 서비스 내용 확인

● 노사협정에서 정해진 지정자금이동업자 중 어느 지정자금이동업자를 이용할지 검토합니다.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르므로 검토 시에는 각 지정자금이동업자의 웹사이트 등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여러 개의 지정자금이동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자금이동업자 검토 시의 유의점

■ 임금을 받는 계좌에는 수입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상한액은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는 초과분이 미리 본인이 지정한 은행 등의 예·저금계좌(지정대체계좌)에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또한 지정대체계좌로의 자동 출금에 드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좌 잔고의 현금화(출금) 방법이나 수수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ATM이나 은행계좌 등으로 출금함으로써 계좌 잔고를 현금화(출금)할 수도 있으며 적어도 월 1회는 노동자 수수료 부담 없이 계좌로부터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출금처나 2회째 이후의 수수료는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2 고용주에 대한 개별 동의 등

- 고용주(또는 지정자금이동업자)로부터 임금의 디지털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의 설명을 들은 후, 고용주에게 임금의 디지털 지급에 관한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동의와 더불어 스스로 결정한 이하의 사항을 고용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디지털 지급으로 수령을 희망하는 임금의 범위와 그 금액
- (2) 지정자금이동업자(서비스)명 및 임금의 수취처가 되는 계좌 정보
(예: 계정 ID, 명의인 이름)
- (3) 지급 개시 희망 시기
- (4) 은행 등의 지정 대체 계좌 정보 등



지정자금이동업자의 계좌는 '예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불이나 송금에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이용 실적을 근거로 실제로 지불 등에 사용하는 전망 액수를 설정해 주십시오.

3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이용 신청

- 고용주에 대한 동의 후에는 지정자금이동업자의 앱 등으로 임금의 디지털 지급 이용 신청을 합니다.
또한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이용 신청 후에 고용주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자금이동업자에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계좌 잔고의 신속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신청의 절차 안에서 노동자 여러분과 보증 기관에서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도 아울러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정자금이동업자의 웹사이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대체계좌의 정보는 **최신 상태로!**

- 지정대체계좌는 계좌 잔액이 수입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예·저금계좌로 지정자금이동업자가 파산했을 때에 계좌잔고가 변제되므로 중요합니다. 개명 등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해약 등으로 유효하지 않게 된 예·저금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등의 경우, 자동 출금이나 변제에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정대체계좌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정대체계좌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지정자금이동업자에 신고해 주십시오.

3 임금의 디지털 지급을 **그만두는 경우나 전직·퇴직한 경우 . . .**

- 고용주 외에 지정자금이동업자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대해서도 해약될 수 있습니다. 해약 절차에 있어서 보증기관에 연락이나 신고 등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정자금이동업자에 확인해 주십시오.

4 만약의 경우가 발생하면 . . .

■ 부정거래(잠작가는 데가 없는 출금 등)가 발생한 경우

계좌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 전액이 보상됩니다. 단, 일정기간(예: 손실발생 다음날부터 30일) 안에 지정자금이동업자에 통지가 필요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자금이동업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자금이동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보증기관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계좌 잔고가 신속하게 변제됩니다. 또한, 변제에 있어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지정대체계좌로 변제금이 송금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으로부터 보증기관에 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정자금이동업자 또는 보증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